

##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」를 3회에 걸쳐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시청장

2021. 9. 15.



1. 건명: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
2. 근거: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공시송달 내용
홍목란	1955.07.30.	경기도 부천시 부일로233번길 ***	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	「고용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최종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간,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에 해당되어, 수급자격 불인정.	① 귀하가 '21.6.18.에 신청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“불인정” 되었습니다 ② 불인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공고일 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계산하여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 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 바랍니다

4. 공고기간: 2021. 9. 15. ~ 2021. 9. 29.(15일간)
5. 이와 관련한 사항은 부천시청 부천고용복지+센터 이수인 주무관(☎ 032-320-895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